

# 입법정보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03

2026



# 목차

---

01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	01
	2.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02
	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03

---

02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04
	2. 화성시 지역생산물 구매 활성화 조례	05
	3. 완도군 신종년 일자리 지원 조례	06

---

03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1. 위원회 심의안건 사전공개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충청남도 당진시)	07
	2. 주민자치회 협의회 설치·운영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경기도 고양시)	08
	3. 상가 공실 실태조사 및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인천광역시 연수구)	09

---

04	국외 입법례	
	• 프랑스의 주택공급 촉진 입법례	10



1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2026. 3. 1. | 법률 제20671호, 2025. 1. 21. | 제정

### 제정이유

-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교육감 소속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시도·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설치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체계 및 지원기반을 마련함.
- 교육부장관이 매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함.
-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을 연계하도록 하는 등 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함.
-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교육비, 상담, 학습지원 등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관리하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교육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2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26. |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 제정

### 제정이유

-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개념을 정의하고, 병역이행 기간을 연령에 가산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
- 전담기관이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발굴·선정하고,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연계·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
-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등 맞춤형 지원과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 및 전문기관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 전달체계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함.



## 3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27. |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 제정

## 제정이유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 장애인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통합지원 대상자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지역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체계를 구축함.
- 통합지원 신청, 대상자 발굴·조사 및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절차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지원,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하도록 함.
-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비용 지원, 권한 위임·업무 위탁, 비밀보호 및 벌칙 규정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1

##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3. 4. | 경기도조례 제8849호, 2026. 3. 4. | 제정

### 제정이유

- 기후위기, 감염병, 정전·통신장애 등 다양한 재난이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재난관리체계는 개별 재난 중심으로 운영되어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바, 복합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재난 간 연계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로 다른 재난이 동시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개념을 정의하고, 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함.
-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재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복합재난 발생 사례 분석, 재난 간 연계성 검토, 대응체계 개선,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
- 복합재난 대응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여 협력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함.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함.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시·도별 현황

-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등



### 2

##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시행 2026. 4. 1. | 경기도화성시조례 제2560호, 2026. 3. 10. | 제정

### 제정이유

- 화성시 및 공공기관이 관내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둔 지역기업의 물품·공사·용역·서비스 구매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기업’ 및 ‘지역생산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적용범위를 규정함.
-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등 적용 대상 기관을 명시함.
- 시장 및 각 기관의 장이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구매 촉진, 설계 반영, 시장조사 등 책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
-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역생산품 정보 제공 및 구매 협조 요청 등 민간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함.
- 지역기업 이용 미흡 시 사유서 제출을 통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

### 관계법령

-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지방출자출연법」, 「지방공기업법」

### 시·도별 현황

-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안산시 등



### 3

## 완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시행 2026. 3. 24. |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3201호, 2026. 3. 24. | 제정

### 제정이유

- 완도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대한 취업·창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애재설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안정 및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중년(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의와 활동적 노후생활, 생애재설계 등 관련 용어를 규정하고,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
- 지원대상을 완도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정하고, 필요 시 사업별 지원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직업훈련·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 사회참여·사회공헌, 여가·커뮤니티, 건강·문화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 지원사업 수행 기관·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신중년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고용정책기본법」, 「노인복지법」

### 시·도별 현황

-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



1

## 위원회 심의안건 사전공개 조례 규정 가능 여부

[의견26-0060] 충청남도 당진시

### 질의요지

- 당진시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 전에 심의 안건의 내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위원회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 자체는 정보공개 원칙에 부합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여부에 대해 행정기관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에서 안건의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일괄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상위법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음.
- 이에 따라 위원회 안건 사전공개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예외를 두는 등 정보공개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일률적 공개 규정은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

# 주민자치회 협의회 설치·운영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

[의견26-0049] 경기도 고양시

### 질의요지

- 읍·면·동 주민자치회로 구성되는 시 단위의 ‘주민자치회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함.
- 읍·면·동 주민자치회 간 정보 공유, 현안 논의, 정책 연계 등을 위한 시 단위 협의회는 이러한 자치사무 수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주민자치회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자문기관 설치 기준(중복금지, 존속기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 3. 상가 공실 실태조사 및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의 조례 규정 가능 여부

[의견26-0080] 인천광역시 연수구

### 질의요지

- 공실 상가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상가 공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실태조사 항목으로 공실 수, 건축물 용도, 임대료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상가 공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각종 조사·통계 작성 및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 실태조사 항목은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실 수, 건축물 용도 등은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임대료 등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조사 및 공개 과정에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다만,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상가 소유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유의가 필요하며, 공개 시에도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개 범위와 방법을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의 주택공급 촉진 입법례

국회도서관 | 최신외국입법정보 | 2026-4호 | 2026. 3. 17.

- 프랑스는 신규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도시계획 및 주택공급 간소화법」을 제정·시행하였음. 해당 법은 도시계획 수립·수정 절차 간소화, 인허가 절차 개선, 용도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임.
-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 통합 및 전자적 주민참여 도입, 복수 비인접 토지에 대한 일괄 인허가 확대, 불복제기 기간 단축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포함됨. 또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의 주거용 전환을 허용하고, 수직증축 및 기존 건축물 활용을 촉진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공공개발 주체의 역할 강화와 공공임대주택용 토지 확보 지원도 병행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례는 단순한 인허가 완화를 넘어 도시계획 체계, 토지 활용, 개발주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우리나라 역시 인허가 지연 및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 간소화와 용도규제 완화, 공공주도 개발 역량 강화 등을 연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프랑스 사례는 주택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함.

## 입법정보란?

법률 제정·개정 동향,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국외 입법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법령 입법예고 사항 확인

- 법제처 | <https://bit.ly/4tPEaBq>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s://bit.ly/46kTUCr>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033-249-5707